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영철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도출하여 시민의 알 권리 확대

3. 주요내용

-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정함(안 제72조제4항)
 - 현행 24시간을 48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으로 변경
-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함(안 제72조제4항)
 - 24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『지방자치법』 제42조 및 제7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규칙안은
 -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도출하여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

기능 강화 및 가능한 대안 제시

○ 주요내용

-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현행 24시간을 48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으로 변경하고,
-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24시간(휴무토요일, 공휴일 제외)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4항은 미리 의원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현행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으로는 집행기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, 답변내용이 시정 질문 당일 의석에 배부함으로써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실정임.
-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질문요지서의 집행기관 송부기한을 연장하고, 집행부의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심도 있는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